

의안번호	제16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8월 일 (제29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0년 7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연월일 : 2010년 7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937명 → 2,888명 ($\triangle 49$ 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47명 → 1,398명 ($\triangle 49$ 명)
 -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없음.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 3>

○ 총계	2,937	→	2,888	$\triangle 49$
- 일반직	1,086	→	1,042	$\triangle 44$
· 4급이상	72	→	67	$\triangle 5$
· 5급이하	1,014	→	975	$\triangle 39$
- 연구직	138	→	137	$\triangle 1$
· 연구관	22	→	21	$\triangle 1$
- 기능직	247	→	243	$\triangle 4$

-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37”을 “2,88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47명”을 “1,39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 계	2,888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42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7	39	7	4	6	1
5급이하소계	975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7			-		
연 구 관	21			19	2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78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68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 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43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937</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7</u>명 2. ~ 4.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888</u>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98</u>명 2. ~ 4.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⑤(생략)